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211

발의연월일: 2022. 6. 30.

발 의 자:정점식·김용판·김태호

박덕흠 • 성일종 • 엄태영

유경준・이달곤・조수진

조해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 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 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형식 승인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 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 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2 022년 6월 1일 발효)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7조).
-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취소하도록 함(안 제18조).
-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해당 설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37조 및 제42조).

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법률 제 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형식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1의3.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및 형식 승인시험의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검사하 거나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 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 또는 교환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제18조"를 "제18조 및 제18조의2"로 한다.

제4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46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

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 7 |
| 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 | |
|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 | |
| 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 | |
|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 |
| 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u>이</u> | <u><후단</u> |
|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 <u>삭제></u> |
|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 |
|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 | |
| 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 |
| 하는 정기검사·중간검사 또는 | |
|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 |
|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 ⑧·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 |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
| 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 |
|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 | |
|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 |
| 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 | |

다. 다만, <u>제1호</u>,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형식승인 · 변경승</u> <u>인 또는 검정</u>을 받은 경우 <<u>신 설></u>

<신 설>

2. ~ 4.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 <u>মাহ</u> |
|-------------------|
| |
| |
| 1 |
| <u>형식승인 또는 변경</u> |
| <u>승인</u> |
| 1의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 1의3.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
| <u>경우</u> |
| 2. ~ 4.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
|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 |
|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 |
| 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
| 도 취소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
|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
| 및 형식승인시험의 취소 등의 |
|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
| 부령으로 정한다. |
|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
|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 |
| 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 |

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 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제17조 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 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 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중대한 결 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 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 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 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 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 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 또 는 교환 및 그 사실의 공표 등 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 6. (생 략)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 략) <신 설>

8. ~ 15. (생략)

-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 략) <신 설>

 6의2. (생 략)

 7. ~ 11. (생 략)

 ② (생 략)

| <u>.</u> |
|-----------------------------|
| 1. 제18조 및 제18조의2 |
| |
| 2. ~ 6. (현행과 같음) |
| 제42조(벌칙)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
| <u>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u> |
| 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
|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 8. ~ 15. (현행과 같음) |
| 제46조(과태료) ①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u>6의2.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u> |
| 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
|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 <u>6의3</u> .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
| 7. ~ 11.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